

1. 개정이유

중대 비위(디지털 성범죄, 스토킹, 음주 운전자 은닉·방조)에 대한 공직 사회 내 경각심을 제고하고 엄정한 징계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별도로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디지털 성범죄·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(안 별표1, 별표1의4 일부개정)

- 1) ‘성 관련 비위’에 디지털 성범죄(딥페이크 성 비위, 음란물 유포) 별도 징계기준 신설(안 별표1의4)
- 2) ‘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’에 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(안 별표1)

나. 음주 운전자 은닉·방조 비위 징계기준 신설(안 별표1의5 일부개정)

- 1) 음주운전 책임을 피하기 위해 ‘제3자’를 ‘운전자’로 내세우는 ‘음주 운전자’(은닉교사) 및 ‘비운전자’(은닉자) 대상 징계기준 신설
- 2)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, 음주운전을 권유·독려한 동승자 대상 징계기준 신설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5. 9. 16. ~ 10. 27.)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7호마목을 제7호바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스토킹	파면	파면-해임	강등-감봉	감봉
--------	----	-------	-------	----

별표 1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※ 비고
7. 제7호마목의 “스토킹”이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

별표 1의4 제1호바목을 제1호사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사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바.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	파면	파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
사. 가목부터 바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	파면	파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-견책

별표 1의4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음란물 유포	파면-해임	해임-정직	정직-감봉	감봉
---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	----

별표 1의4 비고에 제5호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※ 비고
5. 제1호바목에서 “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”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6. 제4호에서 “음란물 유포”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별표 1의5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음주운전 은닉 또는 방조	
가. (은닉) 제3자(비운전자)가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진술 (음주측정 포함)을 한 경우	강등-감봉
나. (방조)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유발한 경우	정직-감봉

별표 1의5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※ 비고
8. 음주 운전자(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를 포함한다)가 제3자에게 허위진술 (음주측정 포함)을 요청하는 등 음주 운전자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경우에는 위 표의 처리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.(제1호 가목은 제외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징계기준 적용례) 별표1, 별표1의4, 별표1의5 개정 규정은 이 규칙
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